

##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(안)

의안 번호	1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5. 15.  
제출자 : 서초구청



### 1. 제정이유

현대사회의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탄천 유역의 수질 악화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탄천 유역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속 자치단체들이 탄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“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”(가칭)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약을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협의회의 명칭은 “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”로 함. (안 제2조)
- 나. 기능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감시 등으로 함. (안 제3조)
- 다. 협의회는 회장 1인과 회원으로 구성하되 서초구청장, 강남구청장, 송파구청장, 성남시장, 용인시장, 과천시장으로 함. (안 제5조)
- 라. 회장은 매년도 첫 정기회의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함. (안 제6조)
- 마.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. (안 제7조)
- 바.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며, 수시회의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함. (안 제9조)
- 사.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함. (안 제11조)
- 아.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. (안 제14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지방자치법 제 142조 ~ 제148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의 : 강남구, 송파구, 성남시, 용인시, 과천시
- 라. 기타 : 협의회 규약 별첨

##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(안)

**제1조(목적)** 탄천 유역에 인접된 서울특별시 남동지역 및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하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 공동노력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이 협의체의 명칭은 “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3조(기능)**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

1.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
2. 상 · 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
3.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4.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
5. 환경시설설치에 관한 자료 등 업무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
6.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사무소의 위치)**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 둔다.

**제5조(구성 및 조직)** ①협의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, 송파구청장, 서초구청장, 경기도 성남시장, 용인시장, 과천시장을 위원으로 한다.

②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④간사는 회장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 · 과(과)장으로 한다.

**제6조(회장의 선출)** 회장은 매년도 첫 정기회의시 선출하며,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**제7조(임기)**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8조(회장의 직무 등)** ①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, 회의를 주재하며, 협의회를 대표한다.

②회장이 유고시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
③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관장한다.

**제9조(회의운영 등)**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를 개최하며,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정기회의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, 수시회의는 개최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도록 한다.

③회장은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회의 개최 15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.

④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관계공무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

**제10조(업무의 인계인수)** 회장이 변경될 시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에게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고,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의결)** ①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②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대신 참석할 수 있으며 또의와 의결권을 가진다.

**제12조(회의록 작성)**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자료제출 요구)**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 할 수 있으며, 기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.

**제14조(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)** ①협의회는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.

②실무협의회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·국(과)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, 상정된 안건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석,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③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간사로 하며,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회장소속 지자체의 관련 과장으로 한다.

**제15조(경비부담)** 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.

②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.

**제16조(결의사항의 처리)** ①협의회에서 합의,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조정요구)** ①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.

②관계위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위원이 직접 조정요청 할 수 있다.

**제18조(규약개정)**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.

**제19조(보칙)**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약은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